### 청주교육대학교 국내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2001. 3. 1 규칙 제1066호

#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 2(대학원 학칙 제16조)의 규정에 의거 청주교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와 국내 타 대학교간 교류학생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교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 생에게 적용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소속대학교"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교를 말한다.
  - 2. "수학대학교"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대학교를 말한다.
- 제4조(학점 및 학기 인정)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수학 취득한 학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수학학기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#### 제 2 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교 수학

- 제5조(지원자격) 타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 "지원자"라 한다)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2.75(실점수 80점)이상 인 자.
  - 2. 대학원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.25(실점수 85점)이 상인 자
  - 3.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제6조(지원신청)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학신청원(별지 1호 서식)을 소속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  -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강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에, 계절학기는 학술교류 대학교의 계절학기 운영계획에 따른다.
- 제7조(수학허가) 수학은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- 제8조(정원) 정규학기 타 대학교 수학 학생의 정원은 본교 당해 학과정원의 20%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.

- 제9조(등록) ①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본교에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납부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협정사항에 따른다.
  - ③ 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대학교의 요구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이에 관한 사항은 수학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10조(수학허가의 취소) ① 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이내에 본교에 수학허가 취소 원(별지 2호 서식)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수학허가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7조 및 8조를 준용한다.
- 제11조(교과목의 이수) 이수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소속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.
- 제12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, 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- 제13조(학기당 취득학점)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이내로, 대학원과 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.
- 제14조(학점의 인정 범위 및 기준) ① 학점인정은 수학기간동안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36학점 이내로 하며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.
  - 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 할 수 있다.
  - ③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대학의 교과과정 이외의 과목이라도 교양(전공)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- ④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  - 1.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함.
  - 2. 교과목이 교과구분, 이수단위, 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이 본교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소속학과에서 학사관계규정과 교육과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후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함.
  - 3.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.
  - 4. 휴학기간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.
- 제15조(학점인정 절차) 수학학점은 수학대학교의 수학결과 통보에 의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#### 제 3 장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

제16조(지원자격)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

- 제17조(지원신청) 소속대학교 총장은 지원자 명단을 학기 개시(계절학기 개강)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한다.
- 제18조(수학허가)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(계절 수업 개강) 3주전까지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다.
- 제19조(정원)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정원의 20%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 정원은 따로 정한다.
- 제20조(등록금 및 수강료 등) ①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학기간중 소속대학교에 등록금을 납입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은 타대학과의 협정사항에 따른다.
  - ③ 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수강허가의 취소) 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교에 수학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, 수강신청의 변경(별지 3호 서식) 및 취소는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- 제23조(취득학점)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이내로,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계절당 6학점 이내로 한다.
  - ② 수학기간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36학점이내로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.
- 제24조(취득학점의 처리)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교에 통보한다.
  - ② 전항의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25조(신분증의 발급)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신분증(별지 4호 서식)을 발급할 수 있다.
- 제26조(시설물의 이용)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, 실험실습실, 생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2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 학간 협의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1호]

## 수 학 신 청 원

	소	속			대학	亚			학	과(부)	)		
지 원 자	성	명					주민	등록	번호				
인 적 사 항	학	번					전 3	화 번	호	(	)	-	
		기	이수학기	] 평균	·평점					성별	(남	•	여)
수학대학교			대학	卫	대학			학과	(부)		학년		
학기구분			정규 학	기(	),			계절	1 수	겁(		)	
수학기관			년	월	일	~		ų	1	월	일		
			교 과	목	경		ğ	학 주	4		비	ュ	<u>!</u>
수 강 예 정													
교 과 목													

위와 같이 수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 . . . .

신 청 인 ① ① ① 기 도 교 수 ② ① 약 과(부) 장 ②

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

### 수학허가취소원

소 속	대학교	학과(부)	) 학년	
성 명		주민등록번		
		학	번	
수학대학교	대학교 다	대학 형	학과(부)	학년
학기구분	정규 학기(	), 계	절 수업(	)
취소사유				

위와 같이 수학 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 . . . .

신 청 인 ① ① 지 도 교 수 ② ① 약 과(부) 장 ②

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

### 수강신청변경원

	소 속	다	학교			학과(부)			
지 원 자 인적사항	성 명		주민등록	번호			-		
인적사항 	학 번		전 화 반	호	(	)		_	
			성	별		(남	•	여)	

	수 강 선	<u> </u> 청 :	과 목	변 경 과 목					
수	과 목 명	학점	이수예정	과 목 명	학점	본교 성적인정 교과목			
강 신		7.0	학 기	학 기 과 등 등		구분	교과목명	학점	
건   청									
변									
경									
내									
용									

위와 같이 수강신청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 . . . .

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

# 교류 학생증

		교류 학생증					
사진 -	쿠착	학번:					
		성명:					
발급번호	등록학	기 : 200 년 확기					
	2	200					
	청주	·교육대학교총장					